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041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체의 다양화로 명확히 밝히고 그 외 일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체의 다양화로 함(안 제6조).
- 연구기관 선정 공모방식의 예외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8조).
- 입법담당관가 상임위원회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회의 문구를 첨가함(안 제9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”를 “연구용역의 주제를  
다양화하고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
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”로 한  
다.

안 제9조제3항 중 “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”를 “평가위원회 회의에  
참석하여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관리”란 <u>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----- 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	<p><u>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(이하 “사무처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</u>이 선정한다.</p>	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</u>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 -----.</p>	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<u>의회사무처</u>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</p>	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</p>	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신 설>

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생략)

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며, 공무원인 위원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

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”을 “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른다.

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따라”를 “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”을 “입법담당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관리”란 <u>연구용역 과제 공모</u> <u>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</u> 모든 업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</u> ----- --.</p>
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(이하 “사무처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.</u></p>	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

1. ~ 3. (생략)

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

<신설>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생략)

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른다.

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----- 다음 -----

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. 다만,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」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정책위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  
--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-----. <단서 삭제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 입법담당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